

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<규격추가> 자주 묻는 질문(FAQ)

1 혁신제품 지정제도 신규등록과 규격추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?

<답 변>

- ◆ **(신규등록)** 접수마감일 기준 5년 이내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&D 사업 완료(성공) 후, 그 기술을 사업화한 중소기업*의 제품으로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」제5조제1항 제2호에 따라 **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없는 제품**

*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

- ◆ **(규격추가) 혁신제품 지정 후** 추가 기술 개발 등의 사유로 **핵심 성능은 유지** 되었으나, 제품의 외형 및 비 핵심 성능 등이 변경 혹은 추가된 제품.

* 최초 혁신제품 지정 제품이 다수의 제품으로 구성된 복합품인 경우 판매를 위해 분리·개별 신청 불가, 신규기능이 추가된 복합품일 경우 신청 가능

2 신청서에 물품식별번호를 누락(오기) 했습니다. 접수 마감 이후 수정이 가능한가요?

<답 변>

- 접수 마감 이후 물품식별번호 **수정 변경은 불가**합니다. 따라서 물품식별번호 기재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입한 경우, 조달적합성 검토 대상에서 부적격 또는 보류로 규격추가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.

3 규격추가 제품의 경우, 혁신제품 인증기간은 어떻게 되나요?

<답 변>

- 규격추가 혁신제품의 유효기간은 「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」 제18조 제4항에 따라, 최초 지정(기 지정 혁신제품)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
▲ 예시 인증기간 :

- (기 지정 혁신제품 유효기간) : 23. 07. 31 ~ 26. 07. 30
- (규격추가 선정일) : 24. 07. 31
- (규격추가 모델(규격)의 혁신제품 인증기간) : 24. 07. 31 ~ 26. 07. 30

4 경쟁입찰참가자격증 내 제조 유효기간 갱신여부 확인이 필요한가요?

<답 변>

- 네 그렇습니다.

경쟁입찰참가자격증 내 유효기간 경과는 혁신제품 지정 절차 중 조달적합성 검토시 부적합 사유에 해당되어 혁신제품 지정에서 보류(제외) 될 수 있습니다.

이 점 유념하시어 혁신제품 지정제도 신청 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 [나라장터\(g2b.go.kr\)](http://나라장터(g2b.go.kr)) 로그인 - 나의나라장터 - 업체정보관리 - 입찰참가자격변경/제조물품갱신등록 신청메뉴

5 규격추가 제품 신청시 조달 관련 법정 의무 인증자료 등의 유효기간, 자격요건 등을 확인 및 갱신하여야 하나요?

<답 변>

- 네. 자격요건 변동 및 유효기간 등이 만료되었다면 **반드시 갱신**하셔야합니다.

- 혁신제품 지정제도 신청시 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허가·등록·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·인가·면허·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함을 증빙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증빙자료와 함께 반드시 제출*하셔야 합니다.

*(서식4) 법정 의무 인증자료 목록

- 당초, 혁신제품 최초 지정(기 지정 혁신제품)시에는 법정 의무 인증 등을 완료하고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, 규격추가 신청 시점에 기간의 경과로 인해 자격요건 및 유효기간 등이 만료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

- 자격요건 및 유효기간 미갱신의 사유는 조달적합성 검토 시 부적합 사유에 해당되어 혁신제품 지정에서 보류(제외) 될 수 있으니,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